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안년월일 : 1995년 11월 일

제안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이, 개정시행 ('95. 1. 1)됨에 따라, 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기, 동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5. 7. 1)으로, 부시장의 정수가 변경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었기 개정,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 「중요한 조례, 규칙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3조)
-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관실」로 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개정 ('95. 4. 7)됨.

○ 기획담당관 명칭 → 기획관으로 변경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 7. 1개정)

○ 제10조의 2 (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④ (이하 생략)

○ 제39조(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④ (이하생략)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2.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제6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관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회조례 제2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제5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소방본부장, 공보관, <u>기획담당관</u>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에 인사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④~⑤(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행정부시장</u> ----- ----- ----- ----- -----</p> <p>③ ----- ----- <u>기획관</u>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조 (결정사항) (생략)</p> <p>1. (생 략)</p> <p>2. <u>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u></p> <p>3. <u>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u> 조래하는 사항</p> <p>4. <u>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u> 시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p> <p>5. <u>기타</u>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p>	<p>제3조 (결정사항)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 <u>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과</u>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조래하는 사항</p> <p>3. <u>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u> 시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p> <p>4. <u>기타</u>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p>
<p>제6조 (간사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u>기획담당관실</u>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 (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획관실</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12월20일

내 무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1995. 12. 20)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이, 개정시행('95. 1. 1)됨에 따라, 시의 보조·보좌 기관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기, 동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95. 7. 1)으로, 부시장의 정수가 변경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었기 개정,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 「중요한 조례, 규칙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3조)
-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관실」로 개정함.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조준봉)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동 조례중 제2조에서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제3조에서는 「중요한 조례, 규칙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금년

7. 1부터는 별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된바 삭제하는 것이며, 제6조의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관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의 보조, 보좌기관 명칭의 변경등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